

대전지방법원 2024. 10. 24 선고 2024가단1887 판결 [건물명도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2024. 10. 17.

판결 선고2024. 10. 24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6층 다가구주택 210.81㎡ 중 별지 목록 도면 ㉠,㉡,㉢,㉣,㉤,㉥,㉦,㉧,㉨,㉩를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59.4㎡를 인도하라.
2. 피고는 원고에게 4,950,000원을 지급하고, 2024. 1. 10.부터 위 1.항 기재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매월 금55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4. 제1항,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이종광

별지